

서울특별시 마포구 보훈회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

2020. 2. 3.
복지도시위원회

1. 심사경과

- 가. 제안일자 및 제안자: 2020. 1. 21. 서울특별시 마포구청장
- 나. 회부일자 : 2020. 1. 22.
- 다. 상정일자 : 제235회 임시회 제1차 위원회(2020. 2. 3.)
상정, 심사, 의결

2. 제안설명요지

□ 제안설명자 : 복지정책과장 김경숙

가. 제안이유

국가를 위하여 희생·공헌하신 분들의 나라사랑 정신을 선양하고 국가 보훈 대상자를 예우하는 기반을 조성 할 수 있도록 보훈회관 운영 활성화 및 지원의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관련 조례를 제정하고자 함

나. 주요내용

- 1) 조례 제정의 목적, 정의, 명칭 및 위치(안 제1조 ~ 제3조)
- 2) 기능, 운영방향 및 운영방식(안 제4조 ~ 제6조)
- 3) 입주단체 및 운영협의회(안 제7조 ~ 제8조)
- 4) 시설의 이용 및 지원(안 제9조 ~ 제10조)
- 5) 양도금지 등, 원상복구 및 손해배상(안 제11조 ~ 제13조)
- 6) 준용 및 시행규칙(안 제14조 ~ 제15조)

3. 검토보고 (최종의 전문위원)

가. 제안경위

- 동 조례안은 마포구청장으로부터 2020.1.21. 제출되어, 의안번호 제6호로 2020.1.22. 우리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임.
- 제정취지는 국가를 위하여 희생·공헌하신 보훈대상자의 삶의 질 향상과 나라사랑 정신을 선양하고자 보훈회관 설치 및 운영 지원에 관한 근거 규정을 마련하여 운영의 효율성을 도모하고자 함.

나. 주요 검토의견

(1) 조례제정 필요성 검토

- 마포구 보훈회관은 「서울특별시 마포구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」의 예산지원 근거¹⁾를 통하여 2011년부터 설치·운영해 오던 중 2018.3.13.자로 대지 496㎡에 지하1층/지상5층 규모로 보훈회관을 신축 개관하여 확대 운영됨에 따라 국가를 위하여 희생·공헌한 국가보훈대상자의 복지증진 및 선양과 예우의 기반 조성을 위하여 「국가보훈 기본법」 제5조 및 제23조²⁾ 등에 따라 국가보훈대상자 지원을 위한 보훈회관 운영 활성화 등 근거 규정을 마련하는 조례 제정의 필요성은 있다 하겠음.

1) **제6조(예산지원)** 구청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에 필요한 예산을 국가보훈대상자 및 보훈단체 등에 지원할 수 있다.

1. 국가보훈대상자의 권익신장과 보훈회관 등 시설의 운영. 2. ~ 9.11.(생략)

10. 보훈단체 운영 <개정 2019.10.10>

2) **제5조(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)**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희생·공헌자의 공훈과 나라사랑정신을 선양하고, 국가보훈대상자를 예우하는 기반을 조성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.

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2조에 따른 기본이념을 구현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·시행하여야 한다.

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국민 또는 주민의 복지와 관련된 정책을 수립·시행하거나 법령 등을 제정 또는 개정할 때에는 국가보훈대상자를 우선하여 배려하는 등 적극적 조치를 하여야 한다.

④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국가보훈사업에 필요한 재원(財源) 조성에 노력하여야 한다.

[전문개정 2011. 8. 4.]

제23조(공훈선양사업의 추진)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희생·공헌자의 공훈과 나라사랑정신을 선양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여야 한다. <개정 2013. 5. 22.>

1. 추모사업 및 기념사업

2. 희생·공헌자의 공훈과 나라사랑정신을 선양하기 위한 시설(이하 "공훈선양시설"이라 한다)의 설치·관리

3. 국민의 나라사랑정신 함양교육, 3의2. 희생·공헌자의 발굴

4. 국가보훈대상자에 대한 위로 및 격려

5. 그 밖에 희생·공헌자의 공훈과 나라사랑정신을 기리는 사업

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사업을 공공기관·민간단체 등과 공동으로 추진하거나 위탁하여 시행할 수 있다. 이 경우 공공기관·민간단체 등에 대하여 재정적·행정적인 지원을 할 수 있다.

- 참고로 마포구 보훈회관 입주단체 회원의 총 수는 9개 단체 4,346명 (2019.12월 기준)으로 확인되고 있으며, 보훈회관 설치는 전국적으로 경상남도 등 84개 지방자치단체가 조례를 제정하였으며, 서울시에서도 25개 자치구 중 강남구, 강동구 등 15개 구에서 조례 제정이 된 것으로 파악되었음(2020.1월 기준).

〈표 1〉 마포구 보훈회관 시설물 현황

구 분	면 적(m ²)	사 용 현 황	비 고
합계	1,161.64		
5층	158.75	강당	위 치: 신수로58 연면적: 1,161.64m ² 신축개관: 2018.3.13.
4층	169.29	회의실, 강당	
3층	210.58	5개 보훈단체	
2층	211.36	사무국, 관장실, 4개 보훈단체	
1층	138.42	프로그램실	
지1층	273.24	전기실, 기계실, 체력단련실	

〈표 2〉 마포구 보훈단체별 회원 현황

단체명	합계	상이 군경회	미망인 회	유족회	무공 수훈 자회	6.25 참전유 공자회	광복회	고엽제	월남 참전 자회	특수임 무유 공자회
회원수 (명)	4,346	611	345	430	759	681	61	249	1,192	18

(표1,2출처: 마포구)

(2) 조례조문 주요내용 검토

- 본 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안 제1조에서 제4조의 경우는 조례 제정의 목적과 정의, 명칭 및 기능을, 안 제5조에서 제10조의 경우는 입주단체와 운영협의회 구성 등 보훈회관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, 안 제11조에서 제14조의 경우는 다른 용도 사용과 권리양도 등을 금지하며, 안 제15조에서는 시행에 필요한 시행규칙 등으로 총 15개의 조문과 2개의 부칙으로 구성되었음.
- 아울러 주요조문 검토사항으로는 안 제6조의 경우는 ‘운영 목적에 적합한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.’ 이는 「지방자치법」

제104조3) 및 「국가보훈 기본법」 제23조제2항4)과 「서울특별시 마포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」에 따랐으며, 안 제7조의 입주단체는 「국가보훈 기본법」 제3조제2호5)에서 정한 국가보훈대상자로 「국가유공자 등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」 등에 따라 설립된 보훈단체로 정하였고, 안 제10조의 예산지원의 경우는 「국가보훈 기본법」 제23조제2항 등의 지원 근거로, 안 제13조의 손해배상은 「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」 제4조6)에 따르는 등 상위법령 등에 부합하다 판단됨.

(3) 종합의견

- 이상의 제정 조례안은 「국가보훈 기본법」 제5조(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) 및 제23조(공훈선양사업의 추진)와 「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」 제3조(정부의 시책)와 「국가유공자 등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」 제3조(회원) 등에서 지방자치단체는 희생·공헌자의 공훈과 나라사랑 정신을 선양하고 국가보훈대상자를 예우하는 기반 조성을 책무로 정하였고, 아울러 공훈·선양시설을 설치 관리하고 민간단체 등에 재정적·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는 규정에 근거한 바, 전체적 조례 체계나 관계법령에 위반되는 바가 없는 것으로 판단됨.

-
- 3) **제104조(사무의 위임 등)**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나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일부를 보조기관, 소속 행정기관 또는 하부행정기관에 위임할 수 있다.
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나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일부를 관할 지방자치단체나 공공단체 또는 그 기관(사업소·출장소를 포함한다)에 위임하거나 위탁할 수 있다.
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나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 중 조사·검사·검정·관리업무 등 주민의 권리·의무와 직접 관련되지 아니하는 사무를 **법인·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.**
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위임받거나 위탁받은 사무의 일부를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다시 위임하거나 위탁하려면 미리 그 사무를 위임하거나 위탁한 기관의 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.
- 4) **제23조(공훈선양사업의 추진)**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사업을 공공기관·민간단체 등과 공동으로 추진하거나 위탁하여 시행할 수 있다. 이 경우 공공기관·민간단체 등에 대하여 재정적·행정적인 지원을 할 수 있다.
- 5) **제3조(정의)**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.
 2. "국가보훈대상자"란 희생·공헌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으로서 국가보훈관계 법령의 적용대상자가 되어 예우 및 지원을 받는 사람을 말한다.
- 6) **제4조(손해보험 및 공제계약)**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다음 각 호의 공유재산에 대해서는 손해보험이나 공제(共濟)에 가입하여야 한다.
 1. 건물, 선박
 2. 공유재산 대장에 기록된 가격이 1억원 이상인 것으로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중요하다고 인정하는 공작물·기계 및 기구
 ② 지방자치단체가 제1항에 따라 손해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한 재산을 사용·수익허가 또는 대부를 하는 경우에는 유상(有償)·무상(無償) 여부에 관계없이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한 보험료나 공제금에 해당하는 금액을 그 사용·수익허가 또는 대부를 받은 자에게 부과할 수 있다. <개정 2014. 7. 7.> [전문개정 2009. 4. 24.]

- 다만, 안 제8조제1항에서 ‘서울특별시 마포구 운영협의회’를 ‘서울특별시 마포구 보훈회관 운영협의회’로 수정하고, 같은 조 제2항에서 보훈회관 입주단체의 대표들로 구성된 운영협의회는 ‘보훈회관의 합리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마련하여 시행하여야 한다.’와 안 제5조의 운영방향 및 안 제9조의 시설의 이용 등에서 포괄적으로 규정한 바, 보훈회관 운영계획의 작성지침과 강당, 회의실 등 시설 이용자의 사용방법을 보다 명확히 하고자 시행규칙 제정의 검토가 필요하다 생각됨.

4. 질의 및 답변요지 : 생략

5. 토론요지 : 없음

6. 심사결과 : 수정가결(수정안붙임)

7. 기타 소수의견의 요지 : 없음

8. 기타 : 없음